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0. 4. 20.

행정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3월 12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4월 1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 4. 15) 상정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안 동 수 )

#### 가. 제안이유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專門委員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세입증감 효과는 없으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4호
----------	-------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일부 개편됨.

## 2. 주요내용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폐합되면서 폐지됨에 따라 사업소세 감면을 규정한 조문의 감면세목을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2) 입법예고('10. 1.28 ~ 2.17,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사무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6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u>를 면제한다.</p>	<p>-----  -----  -----  -----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u>주민세 재</u>  <u>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u>  <u>-----</u>.</p>